제950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산림청)	1.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신청 · 허가 등(신설) o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(또는 변경)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허가 시 고려사항, 변경 허가신청 기준 등을 규정 ▶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3 2.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신청 등(신설) o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시·군·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수집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 및 공급계약서 등 첨부하여 제출 – 용도변경 및 계측량 변경 등으로 변경발급이 필요한 경우, 변경발급신청서 및 변경내용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▶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4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 5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3.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취소 등(신설) o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사유 발생시 사유별 행정처분의 기준 마련 - (개별기준) ▲거짓발급 : 1차 발급취소 또는 영업정지 3개월, 2차 발급취소 또는 영업정지 6개월 ▲기타 부정발급 : 1차 발급취소, 2차 발급취소 또는 영업정지 3개월, 3차 발급취소 또는 영업정지 6개월 - (일반기준) ▲가중처분 적용차수 : 최근 2년간 위반행위 횟수로 산정 ▲감경처분 : 사소한 부주의나 위반이 경미한 경우 1/2 감경 가능 ▶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5 4.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 기준(신설) o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요건 - 1.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할 것, 2. 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이 있을 것 ▶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9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5.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취소 기준(신설) o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의 사유 발생시 사유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– (개별기준) ▲거짓·부정한 지정 : 1차 지정취소 ▲지정기준 미적합 : 1차 시정명령 2개월, 2차 지정취소 ▲업무 미수행: 1차 시정명령 2개월, 2차 지정취소 ▲자료제출 거부 또는 거짓 보고: 1·2차 시정명령 2개월, 3차 지정취소 – (일반기준) 가중처분 적용차수를 최근 2년간 위반행위 횟수로 산정 ▶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11	
2	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영상기록장치 설치 대상(강화) o 철도건널목 교차지점의 도로·철도 교통량이 많아 철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널목을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 대상으로 규정 *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량이 필요한 건널목 요건 준용 ▶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0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(국토교통부)	1.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 지정기준(신설) ㅇ 각 항공사의 탄소배출량 및 상쇄실적을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검증기관(이하 ’ 검증기관 ‘)에 대한 지정기준 신설 **제4조(검증기관의 지정)**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 1.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3 제1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(이하 "검증심사원"이라 한다)을 3명 이상 갖출 것 가. 전문분야가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1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사목에 따른 항공 분야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공통 분야일 것 나.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2.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을 갖출 것 3.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과 관련하여 배상액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법인일 것 ▶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 2.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(신설) ㅇ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<table>
<tr><th>no.</th><th>법령명</th><th>규제내용</th><th>결과</th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
<table>
<tr><th rowspan="2">위반사항</th><th colspan="4">처분기준</th></tr>
<tr><th>1차 위반</th><th>2차 위반</th><th>3차 위반</th><th>4차 위반</th></tr>
<tr><td>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지정</td><td>지정 취소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폐업·해산 등으로 사실상 영업 종료</td><td>지정 취소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고의·중대 과실로 검증업무 부실 수행</td><td>지정 취소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업무기준(별표 1 제1호~제4호) 미준수</td><td>지정 취소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업무기준(별표 1 제5호~제11호) 미준수</td><td>업무정지(1月)</td><td>업무정지(3月)</td><td>지정 취소</td><td></td></tr>
<tr><td>업무기준(별표 1 제12호) 미준수</td><td>시정명령</td><td>업무정지(1月)</td><td>업무정지(3月)</td><td>지정 취소</td></tr>
<tr><td>법 제7조제1항의 지정기준 미충족</td><td>지정 취소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/table>
▶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1

3.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 업무기준(신설)
○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 업무기준
– 타기관 위탁금지, 지정서대여금지, 취득자료 보안조치 및 비밀누설금지, 배출권 검증보고서의 오류 기준 초과 금지 등

▶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
</td><td></td></tr>
</table>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폐차사원증의 관리 의무 등(신설) ㅇ 해체업자가 종사원을 채용한 경우,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(이하 ’ 협회 ‘)로부터 별표28의2 양식에 따른 사원증을 발급 받아 영업기간 중 이를 달도록 함 - 해체업자는 ▲폐업, 종사원과의 고용관계 종료시, ▲휴업,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사원증을 협회에 반납 또는 보관해야 함 - 협회는 사원증을 발급 · 반납 · 보관하게 된 경우 5일 내에 해당 폐차사원 명단을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▶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 2.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 의무(신설) ㅇ 자동차해체업 종사원이 받아야 할 교육을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으로 나누어 규정하며, 세부적인 교육과목을 규정 - 교육과목 : 자동차해체재활용 관련 법령, 안전 해체 및 재활용 관리, 폐차 · 말소절차 및 고객응대 예절, 전산처리 방법 ▶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3조의3	1.비중요 2.비중요

<table>
<tr><th>no.</th><th>법령명</th><th>규제내용</th><th>결과</th></tr>
<tr><td>5</td><td>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·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
(농림축산식품부)</td><td>1.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(신설)
ㅇ 농촌 경제 ·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· 훈련 · 상담 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 마련
<table><tr><th>규정항목</th><th>세부내용</th></tr><tr><td>대상 기관, 단체</td><td>가.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나.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
다.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
라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</td></tr><tr><td>조직</td><td>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 구비</td></tr><tr><td>인력</td><td>가.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·관리하는 상근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둘 것
나. 교육훈련 과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강사인력을
3명 이상 확보할 것(비상근 강사 포함)</td></tr><tr><td>시설 및 장비</td><td>가. 독립적으로 구획되는 사무실·강의실·화장실 및 그 밖의 교육· 훈련생을 위한 편의시설
나. 컴퓨터, 스크린 및 음향장비 등 교육·훈련에 필요한 장비</td></tr></table>▶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·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

2.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회원수(신설)
ㅇ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을 위해 유지하여야할 최소 구성원 수를 5명으로 규정
▶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·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</td><td>1.비중요
2.비중요
3.비중요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no.</th><th>법령명</th><th>규제내용</th><th>결과</th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3.농촌 경제·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 · 지역지원기관 지정 및 행정처분 (신설)
ㅇ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마련
– 전국지원기관
<table>
<tr><th>지정항목</th><th>세부 지정기준</th></tr>
<tr><td>대상기관
(비영리
법인)</td><td>1.「민법」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
2. 다음 각 목에 따른 법인 또는 기관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기관
가.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나.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
다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</td></tr>
<tr><td>조직</td><td>전담부서를 갖출 것</td></tr>
<tr><td>인력</td><td>관리책임자 1명을 포함,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 4명 이상 확보</td></tr>
<tr><td>시설</td><td>독립적으로 구획되는 사무실·회의실·상담실 및 전산시스템 구비</td></tr>
</table>
– 지역지원기관
<table>
<tr><th>지정항목</th><th>세부 지정기준</th></tr>
<tr><td>대상기관
(비영리
법인)</td><td>1.「민법」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
2.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</td></tr>
<tr><td>조직 및
인력</td><td>담당부서와 담당인력을 갖출 것</td></tr>
<tr><td>시설</td><td>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·공간과 장비 보유</td></tr>
</table></td><td>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no.</th><th>법령명</th><th>규제내용</th><th>결과</th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ㅇ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의 행정처분 기준
– 전국 · 지역지원기관 기준
<table>
<tr><th rowspan="2">위반행위</th><th rowspan="2">법률 규정</th><th colspan="4">행정처분기준</th></tr>
<tr><th>1회 위반</th><th>2회 위반</th><th>3회 위반</th><th>4회 위반</th></tr>
<tr><td>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</td><td>지정취소 대상</td><td>지정 취소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나.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</td><td rowspan="2">지정취소 또는 6개월이하 업무정지 가능 대상</td><td>업무 정지 3개월</td><td>업무 정지 6개월</td><td>지정 취소</td><td></td></tr>
<tr><td>다.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</td><td>업무 정지 1개월</td><td>업무 정지 3개월</td><td>업무 정지 6개월</td><td>지정 취소</td></tr>
</table>
▶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·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,제9조</td><td></td></tr>
<tr><td>6</td><td>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·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
(농림축산식품부)</td><td>1.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(신설)
ㅇ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이 농촌 경제 ·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· 훈련 · 상담 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기준 마련
–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: 지정취소
– 시설·인력기준 미비시 보완 기간(6개월)내 보완 불이행: 지정취소
– 시설인력기준 미충족 : 1차 업무정지 1개월, 2차 업무정지 3개월, 3차 업무정지 6개월, 4차 지정취소
–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 등 업무 미이행 :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업무정지 6개월, 3차 지정취소</td><td>1.비중요
2.비중요</td></tr>
</table>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▶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·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2.사회적 농장의 지정기준(신설) ㅇ 사회적 농장 지정기준 마련 – 프로그램 운영, 내부규약, 회계관리, 교육이수, 규모, 편의시설, 인력, 시설 등 기준 마련 1.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 2. 내부규약(운영 비용 및 이익금 정산 포함)에 따라 운영 3. 회계전산 프로그램 및 회계장부 사용 4. 사회적 농장 운영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교육훈련 기관이 운영하는 사회적 농업 관련 17시간 이상 교육과정 이수 5.「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」 제4조*에 따른 농지,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의 면적 기준(단, 표고자목의 면적 기준은 버섯류 기준 적용) 중 1가지 이상 충족 6. 남녀 구분 화장실, 세면대, 음수대, 실내 활동 공간 및 적절한 휴게공간 확보 7. 농장 관리자 1명과 사회적 농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적절한 인력 확보 8.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에 농업 경영체가 참여하고, 해당 조직의 농업활동이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에 이용될 것 9. 소화기, 구급약품, 개인보호장비 등을 구비할 것 ▶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·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7	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 (공정거래위원회)	1.기업결합 시정방안의 평가 및 수정(신설) ㅇ 공정위 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을 평가한 후 판단 결과를 대면회의를 열어 신고회사에게 통보(제9조③) ㅇ 시정방안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경우, 수정하여 공정위 심사관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,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(부득이한 경우 1회 초과 가능) 재수정요청 및 재수정안 제출 가능 ㅇ 재수정안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, 심사관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수정 절차 중단 ▶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9조, 제11조,제12조	1.비중요
8	궤도운송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행정처분의 기준(신설) ㅇ 궤도사업자 및 일부 전용궤도운영자(산악경사지 등에서의 화물수송용전용궤도 운영자 제외)가 법정 검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경영하거나 궤도를 운영하는 경우, 고의·중과실로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을 일으킨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 - (임시검사→ 수시검사) (1차)사업정지 10일, (2차)30일, (3차) 90일, (4차)궤도사업 허가취소 또는 전용궤도 승인취소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– (정기검사+ 정밀안전검사) (1차)사업정지 10일, (2차)정지 30일, (3차)정지 90일, (4차)궤도사업 허가취소 또는 전용궤도 승인취소 – (중대한 사고 → 중대한 사고등) (1차)사업정지 30일, (2차) 60일, (3차)궤도사업 허가취소 또는 전용궤도 승인취소 ○ 산악경사지 등에서의 화물수송용전용궤도 운영자가 법정 검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경영하거나 궤도를 운영한 경우, 고의·중과실로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등을 일으킨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 – (임시검사 → 수시검사) (1차)운영정지 10일, (2차) 30일, (3차) 90일 – (정기검사 + 정밀안전검사) (1차)운영정지 10일, (2차)30일, (3차)90일 – (중대한 사고 → 중대한 사고등) (1차)운영정지 30일, (2차)60일 ▶궤도운송법 시행령 제5조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9	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마련(신설) ○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자등의 전문성, 인적자원, 경영안정성, 소비자 만족도, 내부통제 수준,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사정 업무 위탁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 – 다만 손해사정 위탁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선정을 위한 별도의 기준 마련이 가능 ○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위탁 평가기준을 수립시 보험회사의 금지행위 규정 – (1) 보험금액·손해율 등을 평가하여 사실상 보험금을 삭감하도록 유도하는 행위(제1호) – (2) 손해율 총량한도 등을 제한하는 행위(제2호) – (3) 손해사정업자등에게 담보별로 보험금의 부지급, 인위적인 삭감을 유도하는 행위 등 손해사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는 행위(제3호) ○ 위탁 기준에 손해사정업무 위탁절차를 포함 ▶보험업감독규정 제9-16의2 2.손해사정사 교육기준(신설) ○ 손해사정 의무교육 20시간 중 5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외부 교육 실시기관을 ①보험연수원, ②보험요율산출기관 및 ③손해사정사·손해사정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 정함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○ 외부교육 강사의 자격요건을 규정 – (1) 금융감독원, 협회, 보험요율 산출기관,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(제1호) – (2) 보험법규, 「상법」 등 보험관련 전공자로서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* 및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로 일하는 자 ▶보험업감독규정 제9-18의3 3.손해사정업자의 공시 의무(신설) ○ ①매 반기 말로부터 3월 이내 ②법 제17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 – (1) 등록된 손해사정사가 5인 미만이거나 (2) 최근 1년간 손해사정 실적이 없는 손해사정업자의 경우 공시 의무를 면제 ○ 공시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 – (1) 대표자의 성명, 회사 주소, (2) 임원에 관한 사항 (3) 회사의 조직, 재무, 손익 및 경영지표 (4) 선임 및 위탁계약 체결현황 (5) 최근 5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 이상의 지적을 받은 내용 및 사유 ▶보험업감독규정 제9-18의4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0	공항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항공업무 수행단체 및 항공관련업무종사자 준수사항(신설) ㅇ 법인이 작업 별 표준작업절차를 작성하여 종사자가 알도록 함 ㅇ 차량 및 장비에 승차정원 · 적재하중을 표기하고 안전장치를 부착 하도록 함 ㅇ 종사자가 공항운영자가 정한 차량 및 장비의 통행방법을 준수하도록 함 ▶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조의2	1.비중요
11	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(강화) ㅇ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(안 별표 14) – 아동 25명 이상인 지역아동센터에 생활복지사 추가 배치 * 생활복지사 수 : 1명 → 2명(아동 25명~29명), 2명 → 3명(아동 30명~50명) 3명 → 4명(아동 51명 이상) ▶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4	1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2	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(교육부)	1.사립대학 적립금 사용내역 공시 방법(신설) ㅇ 사립대학의 적립금 공시 내용, 기한, 방법 등 구체화 – (공시 내용) 법률상 규정된 적립금의 종류별 적립 규모와 사용 내역 – (공시 기한)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내에 공시 – (공시 방법) 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(교육부령)」의 서식(적립금 명세서)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 ▶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8 2.사립대학 적립금 실태점검 사항(신설) ㅇ 교육부의 사립대학 적립금 실태점검의 세부사항 – 등록금회계에서의 적립 범위(건물 감가상각비 내) 및 목적(교육시설 신·증축 등) 준수 여부 – 증권/벤처기업에 대한 적립금 투자 한도 내 투자 여부 – 적립금 투자 대상이 대학(법인)과 특수 관계 법인인 경우 교육부장관에 보고 여부 –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· 운영 여부 ▶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8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3	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제정안 (개인정보보호위원회)	1.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조치 기준(신설) ○ 정보주체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①거부, ②설명 요구, ③검토 요구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규정(안 제3조~제5조) – (거부) 정보주체가 ‘자동화된 결정’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결정의 적용을 정지하여 ‘중대한 영향’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함(안 제3조) – (설명 요구) ‘자동화된 결정’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‘중대한 영향’을 미치는 경우, 개별적으로 의미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간결하게 제공하도록 함(안 제4조) – (검토 요구) 정보주체가 ‘자동화된 결정’ 과정에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재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의견을 제출한 경우 검토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함(안 제5조) ○ 정보주체가 거부·설명등 요구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‘자동화된 결정’, ‘중대한 영향’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제시(안 제6조) ○ 정보주체의 거부, 설명·검토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‘정당한 사유’에 대한 판단기준(안 제7조) – (비교·형량) ‘정당한 사유’ 여부에 대해 권리 제한으로 인한 정보주체의 불이익과 개인정보처리자 또	1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·형량하여 요구(①거부, ②설명·③검토 요구)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▶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제3조,제4조,제5조,제6조,제7조	
14	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(소방청)	1.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(강화) ○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 안정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규정 – 습기 등으로부터 PCB 보호를 위한 조치 규정 – 전원전압변동시험 신설 – 절연저항시험 신설 – 절연내력시험 신설 – 온습도시험 신설 ▶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	1.비중요
15	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501) 개정안 (소방청)	1.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(강화) ○ 제연설비에 설치되는 댐퍼에 점검구 설치 의무화 ○ 예상제연구역 인근 수동기동장치의 설치 기준정 ○ 건물 완공 후 제연설비의 성능을 확인하는 기준 및 절차를 신설 ▶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501) 제10조의2,제11조,제11조의2	1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6	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 (경찰청)	1.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(신설) ○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5조의2 신설) –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이수시간은 40시간 이상으로 하고, 과목이나 시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는 사항으로, –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였던 사항을, 교육 이수시간(40시간) 변동없이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 ▶경비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2.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(신설) ○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관련 규정 신설하여, 경비업체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매 3년마다 6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의무 ▶경비업법 시행령 제15조의3	1.비중요 2.비중요